

#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예규

주관부서 : 공정거래그룹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예규는 임직원들이 경쟁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

제2조(적용범위)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임직원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,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.
- 경쟁법은 공정거래법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전자거래보호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.
-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.
-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.
-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
##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

###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

제 4 조(선임)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제5조(권한)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, 조사권
2.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, 시정요구권
3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
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

제6조(의무)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
2.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

제7조(직무)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
2.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
3.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
4.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등 후속 조치
5.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
6.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 교육
7.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
8.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
9.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
10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)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,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.

제9조(회사의 지원)

-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,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전담부서)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, 회사전체의 자율준수

업무는 공정거래업무 전담그룹에서 주관한다.

## 제2절 자율준수협의회

### 제11조(설치 및 구성)

- ① 자율준수협의회의 위원은 각 본부의 선임그룹리더로 임명하되,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가 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.
- ③ 주관부서 그룹리더는 간사를 맡는다.

제12조(역할) 자율준수협의회는 반기 단위로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2인 이상의 구성원 요구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,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
2.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

## 제3절 임직원

### 제13조(의무)

- ①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각 그룹리더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각 그룹리더는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

### 제14조(자율준수편람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
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5조(모니터링 제도)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, 조사
2.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
3.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, 보고서,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

제16조(교육프로그램의 실시)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예규와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① 경영, 재무, 인사, 조달, 영업 등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예규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,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.
- ③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7조(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, 인사노무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8조(문서관리)

-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, 보관한다.

-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, 보관한다.
-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.

제19조(운영성과 평가)

-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,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20조(공시)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21조(경쟁당국과의 관계)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,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22조(위임)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예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,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2. 6. 29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제정 2003.07.10	개정 2005.05.02	개정 2007.03.05	개정 2013.03.25
개정 2014.04.02	개정 2018.02.26	개정 2022.06.29	